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20. 3. 18.(수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도로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이상헌, 사무관 김정한, 주무관 정원식 ·☎ (044) 201-3887, 3880	
	도로투자지원과	담 당 자	·과장 박병석, 사무관 김병철 ·☎ (044) 201-3906, 3908	
	대중교통과	담 당 자	· 대중교통과장 김동준, 사무관 양찬윤 · ☎ (044) 201-3823, 3832	
보 도 일 시		2020년 3월 18일(수) 15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노선버스,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시행 -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도 통행료 면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‘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’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.
- 최근 고속·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~80%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,
 -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·진출하는 노선버스*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「여객자동차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차량

- 면제기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-19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’에서 ‘경계’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,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(4월18일까지)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,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*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(대상) 의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 등(의료인력 지원·운영 지침)

** (기간)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과 동일하게 적용

○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*를 진입·진출하는 의료인이 '의료인력 확인서'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,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북대구, 서대구, 남대구, 유천, 화원옥포, 달성, 북현풍, 현풍, 칠곡, 팔공산, 경산, 영주, 풍기, 동대구, 수성,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김정한 사무관(☎ 044-201-3887), 대중교통과 양찬윤 사무관(☎ 044-201-38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